

자경증명발급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1. 농지의 소유자

①성명(명칭)	②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③주 소	(전화번호 :)

2.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

④ 소 재 지			⑤지번	⑥지목	※ ⑦면적(㎡)	※ ⑧자경 여부	
시·군	읍·면	리·동				자 경	비자경

「농지법」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구청장·읍장·면장 귀하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	수수료 :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 74에 따름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년 월 일

시장·구청장·읍장·면장 직인

작성방법 :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※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.
(⑧자경 여부란은 해당란에 ○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합니다)

자경증명발급 운영 흐름도

- ★ 자경증명발급 운영흐름도.
- 1.민원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구·읍·면을 방문 또는 온라인[정부24(www.gov.kr)]으로 신청
 - 2.처리기관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/발급

